

# 도서관전문가의 관련 위원회 참여와 도서관 정책제언 활동을 통한 도서관 발전 방안 연구\*

## A Study on the Development of Libraries by the Library Professionals' Participation on Library Related Committees and Advocacy

배 창 섭(Chang-Seob Bae)\*\*

김 영 석(Young-Seok Kim)\*\*\*

### < 목 차 >

- |                             |                               |
|-----------------------------|-------------------------------|
| I. 머리말                      | IV. 위원회 참여를 통한 도서관 정책제언 활동 방안 |
| II. 연구 목적 및 방법              | V. 끝맺는 말                      |
| III. 위원회 참여를 통한 도서관 정책제언 활동 |                               |

### 초 록

21세기 다원화된 사회에서 도서관의 발전을 위해서는 도서관인 스스로가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도서관 발전을 위해 많은 도서관인들이 함께 참여 할 수 있는 영역으로 도서관 관련 위원회 활동을 제안한다. 도서관전문가들이 도서관 관련 위원회에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다른 위원들을 대상으로 도서관과 사서 배치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이해시키고 도서관 정책제언을 한다면, 이러한 활동이 개별 도서관과 더 나아가 국가 전체의 도서관 발전으로 이어질 것이다. 본 연구는 도서관전문가들의 공공 및 대학도서관 운영위원회 그리고 학교도서관 운영에 영향을 미치는 학교운영위원회 활동을 통한 도서관 발전 방안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키워드: 도서관운영위원회, 정책제언, 공공도서관, 대학도서관, 학교도서관

### ABSTRACT

Library professionals should do their best themselves to develop libraries in the diversified society of 21st century. This study suggests library professionals' participation on library related committees and advocacy to develop libraries. If library professionals participating on library related committees bring understanding of other committee members to the importance of the role of libraries and librarians, this effort results the development of an individual library and the all libraries in Korea. This study examines how to develop libraries by the library professionals' participation on the committees of public and academic libraries and school committees and advocacy.

Keywords: Library Administration Committee, Advocacy, Public Library, Academic Library, School Library

\* 이 논문은 2009년도 한국도서관·정보학회 동계학술발표대회(2009년 11월 27일, 경북대학교)에서 발표한 내용을 수정·보완한 것임.

\*\* 마포구립 서강도서관 관장(csbae@hanmail.net) (제1저자)

\*\*\* 명지대학교 문헌정보학과 조교수(yskim7@mju.ac.kr) (교신저자)

• 접수일: 2009년 11월 20일 • 최종심사일: 2009년 11월 30일 • 최종심사일: 2009년 12월 26일

## I. 머리말

우리나라는 지난 2~30년간 정치·경제·사회적으로 매우 빠르게 성장하고, 대내외적으로는 세계화, 민주화, 그리고 정보화가 가속화 되면서 다원화된 사회로 변화·발전하였다. 더불어 우리 사회는 세계화, 민주화, 정보화 과정에서 국가 권력의 탈집중화를 경험하게 되었으며, 새로운 사회 현상의 발생 과정에서 사회의 다양한 요구를 만족시키는데 있어서 기존의 국가 중심적 통치 행위의 한계를 드러냈다.

이에 따라 우리 사회의 구성원들은 자신들의 관심 분야에 대해서 스스로 발전 전략을 강구하는 등 독자적인 생존전략을 마련하고 있으며, 아울러 국가의 관심을 끌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다. 도서관계도 예외는 아니어서 스스로 도서관·정보에 대한 발전계획을 수립<sup>1)</sup>하고, 중앙 및 지방정부의 관심을 유도하기 위해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관중을 불문하고 도서관은 21세기 지식기반사회에서 국가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시설 중의 하나이며, 창조적 지식을 갖춘 인재를 양성하는데 필요한 필수시설이다. 이에 따라 도서관인들은 국가가 이러한 사실을 인식하고 도서관 시설 확충과 사서인력 배치에 관심을 갖도록 노력하고 있다.

21세기 다원화된 사회 속에서 국가가 도서관 운영 및 서비스 발전에 관심을 갖도록 유도하는 방법으로는 도서관전문가들이 국가의 정책 결정권자인 대통령, 고위공무원 그리고 국회위원을 대상으로 도서관 정책제언을 하거나, 이들에게 도서관 운영 및 서비스의 중요성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하거나, 이들을 대상으로 로비나 청원 편지를 보내는 방법들이 있다. 그런데 이러한 방법들은 위로부터 도서관을 발전시키기 위한 활동 전략이다.

한편, 아래로부터 도서관을 발전시키기 위한 활동 전략이 있다.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현재 우리 사회는 다원화된 사회이다. 사회 여러 곳에서 여러 가지 현상과 문제들이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도서관과 관련된 문제들도 사회의 여러 가지 현상들과 복잡하게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도서관 발전을 위한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사회의 한 영역에서만 노력하는 것이 아닌 여러 분야에서 다양한 활동을 펼칠 필요가 있다. 이것이 아래로부터의 도서관 발전을 위한 활동 전략이다.

본 연구에서는 도서관 발전을 위해 많은 도서관인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사회 활동, 즉 아래로부터의 도서관 발전을 위한 활동 방안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본 연구의 필자들은 도서관인들이 도서관과 관련 있는 사회의 여러 분야에서 활동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도서관과 사서 배치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이해시킨다면, 궁극적으로 이러한 활동들이 도서관을 발전시킬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면서, 본 연구는 도서관계 인사가 참여할 수 있는 영역으로 도서관 혹은 도서관 운영에 영향을 미치는 각종 위원회(committee)에서의 정책제언(advocacy) 활동에

1) 대통령 직속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는 2008년 '도서관발전종합계획 2009-2013'을 수립하였다.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도서관계의 어떤 사람들이, 어떻게, 어떤 위원회 활동에 참여하여 도서관 정책제언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대학과 공공도서관에서 도서관 운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조직은 그 도서관의 운영위원회이다. 학교도서관은 그 규모가 작기 때문에 자체 운영위원회 보다는 학교운영위원회가 학교도서관 운영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다. 이와 같이 각종 운영위원회가 도서관 운영에 많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도서관 전문가들이 이들 위원회에 직접 참여하여 정책제언을 한다면, 궁극적으로 이러한 활동들이 도서관을 발전시킬 수 있을 것이다.

## II. 연구 목적 및 방법

### 1. 연구 목적

본 연구는 현 시점에서 도서관전문가들의 도서관 정책제언 활동을 우리나라 도서관과 사서의 위상 강화를 위한 효과적인 방안 중의 하나로 보고, 도서관전문가들의 도서관 관련 위원회 참여를 통한 정책제언의 가능성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본 연구는 구체적으로 도서관전문가들이 참여 가능한 도서관 관련 위원회의 현황과 속성을 살펴보고, 위원회 참여를 통한 정책제언 활동의 효과적인 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도서관전문가들의 공공 및 대학 도서관운영위원회 참여를 통한 정책제언 활동의 가능성, 학교운영위원회 참여를 통한 정책제언 활동의 가능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궁극적으로 본 연구는 도서관전문가들이 도서관 관련 위원회에 참여하여 효과적으로 도서관 정책제언 활동을 하도록 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이를 통하여 우리나라의 도서관 발전 및 사서의 위상을 강화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 2. 연구 방법

본 연구는 문헌조사, 인터뷰 그리고 사례조사 방법을 이용하였다. 문헌조사 방법을 이용하여 도서관 관련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현황을 살펴보고, 도서관전문가들의 도서관 관련 위원회 참여 가능성을 모색하였다. 그리고 많은 도서관전문가들 중에서 도서관 관련 위원회에 참여 가능한 사람이 누구인지 분석하였다. 인터뷰방법을 이용하여 '도서관운영위원회의 역할과 도서관전문가들의 위원회 참여'에 대한 도서관의 사서직 경영자들의 견해를 수집·분석하였다. 연구 조사를 위해 임의로 선정한 3개의 대학도서관과 3개의 공공도서관에 근무하는 총 6명의 중간 및 최고 경영자를 전화 혹은 대면을 통해 인터뷰하였다. 사례조사 방법을 통해서도 도서관전문가들이 도서관 관련

위원회에 참여하고 있는 국내 사례를 조사·분석하였다.

결론적으로 이 세 가지 연구 방법을 이용하여 도서관전문가들의 도서관 관련 위원회 참여를 통한 정책제언 활동의 바람직한 방안을 모색하였다.

### 3. 연구의 제한점

외국의 주요 문헌을 조사·분석한 결과 외국의 사례를 본 연구에 적용하는 데는 한계가 있음이 드러났다. 그 이유는 첫째, 선진국의 경우 각종 도서관의 발전과정이 우리와는 다르다. 예를 들면, 선진국의 경우 위로부터 도서관 발전 노력이 있는데 반해, 우리나라의 경우 아래로부터 도서관 발전을 꾀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선진국의 경우 본 연구의 연구 대상인 도서관전문가들의 도서관 발전 노력 이전에 정책 결정권자들<sup>2)</sup>이 앞장서서 도서관 운영 및 서비스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둘째, 본 연구의 연구 대상인 도서관 관련 위원회, 즉, 공공 및 대학 도서관운영위원회와 학교운영위원회의 설치에 있어서 외국(미국, 영국)과 우리나라는 다르다. 영국 공공도서관의 경우(Usherwood 1996) 운영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지 않고, 미국의 경우(Hage 2004) 우리나라에서는 심의 기구인 'committee' 대신에 의사 결정 기구인 'board'가 있고, 이 이사회의 이사(trustee)들은 우리나라와 달리 모두 도서관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잘 인식하고 이해하는 사람들로 구성된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의 조사 내용인 '도서관전문가의 위원회 활동을 통한 도서관 발전 노력'의 예를 외국에서 찾는 데는 한계가 있다. 이러한 결과로 인해 본 연구는 국내 상황에 국한하여 연구를 수행하였다.

한편, 국내 문헌을 조사한 결과 본 연구가 연구 대상으로 삼고 있는 공공 및 대학 도서관운영위원회와 관련된 선행연구 사례가 전무하다. 따라서 저자들은 본 연구에서 수집·분석된 자료를 중심으로 연구를 수행하였다.

## Ⅲ. 위원회 참여를 통한 도서관 정책제언 활동

### 1. 위원회와 도서관 정책제언에 대한 정의

#### 가. 위원회

우리나라에서 위원회(委員會)라는 용어는 여러 가지 의미로 쓰이고 있다. 국어사전은 위원회를 “일반 행정과는 달리 어느 정도 독립된 분야에서 기획, 조사, 입안, 권고, 쟁송의 판단, 규칙의 제정

2) 지자체의 경우 지자체장 및 지방 의회의 의원 그리고 대학교의 경우 대학의 총장 및 보직 교수.

따위를 담당하는 합의제 기관으로, 특수한 행정 분야에서 일반 행정청의 권한에 소속시키는 것이 적당하지 않은 행정 사무를 맡아보기 위하여 등장한 제도”<sup>3)</sup>라고 정의하고 있다. 즉, 이 사전은 위원회를 하나의 독립된 조직 혹은 기구로 정의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개념의 위원회 외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상설 기구(혹은 조직)로서 하나의 기관에 소속된 위원회가 있다.

결론적으로 우리말 위원회는 크게 두 가지 유형의 조직을 의미한다. 첫째는 하나의 독립된 기관으로서 위원회가 있는데, 이러한 유형의 위원회로는 우리나라의 국가인권위원회, 국사편찬위원회 등이 있다. 둘째는 하나의 기관에 소속된 상설 조직으로서 위원회가 있는데, 이러한 형태로는 자문 위원회, 운영위원회 등이 있다.

이처럼 우리말에서는 위원회라는 용어가 두 가지 의미로 구분 없이 사용되고 있지만, 영어에서는 그 구분이 명확하다. 영어에서는 위의 첫 번째 위원회는 ‘commission’, ‘bureau’, ‘institute’ 등으로 쓰이고 있고, 두 번째 위원회는 ‘committee’로 사용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 말하는 위원회는 두 번째 유형의 위원회(committee)를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의미하는 위원회(committee)는 영리 혹은 비영리 기관 모두에서 일반적으로 설치하는 조직이다. 한 기관에서 위원회 조직은 기관 내외부 전문가를 중심으로 구성하여, 전문적이고 깊이 있는 논의를 바탕으로 특정 사안에 대한 결정을 내리기 위한 것이다.

본 연구는 도서관전문가 즉, 문헌정보학과 교수나 도서관 현장에서 오랫동안 근무한 경험이 있는 사서가 참여하여 도서관 관련 정책제언을 할 수 있는 위원회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에서 연구 대상으로 삼은 위원회는 ‘공공도서관과 대학도서관 운영위원회’ 그리고 도서관운영위원회는 아니지만 학교도서관 운영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는 ‘학교운영위원회’이다. 이에 따라서 본 연구는 도서관전문가가 이러한 위원회에 참여하여 어떻게, 어떤 정책제언 활동을 하고, 또 그러한 활동들이 어떻게 도서관을 발전시킬 수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 나. 도서관 정책제언

본 연구에서 사용하고 있는 ‘도서관 정책제언’의 의미는 다음과 같다. 먼저 ‘정책’의 의미를 살펴보면 영어로는 ‘policy’라고 하는데 ‘방책, 방침, 원칙 그리고 방법’으로(김용원 2004, 2) 해석된다. 문헌정보학용어사전(1996, p.329)에서는 ‘정책(policy)’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조직 내의 광범한 활동을 위하여 받아들일 수 있는 실천과 행동을 개선했던 관리계획이나 일련의 지침.  
즉, 목적이나 목표에 대한 확립된 의도를 표시 하는 행동지침.

위의 정의에서 ‘조직’은 국가나 지방정부와 같은 거대 조직뿐만 아니라 도서관 혹은 소규모 민간

3) 국립국어연구원 편, 표준국어대사전(서울 : 두산동아, 1999), p.4750.

기업과 같은 작은 조직도 포함된다. 따라서 '정책(policy)'은 중앙 및 지방정부만이 마련(수립)하거나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도서관과 같은 소규모 단일 기관도 정책을 마련하고 가지고 있다. 정책에 대한 이만수(2001, p.202)의 정의가 이 주장을 잘 뒷받침 해주고 있다.

정책은 : 각 부서의 업무와 경영 행위의 관계나 방향을 분명히 하기 위한 것으로, 업무 수행을 일관성 있고 효율적으로 수행해 나가기 위해서 어느 기관이 미리 정해 놓은 것으로, 개별 기관은 이를 근거로 하여 업무를 수행한다.

따라서 '정책제언'이란 한 기관에 의미 있는 새로운 정책 혹은 정책의 변화를 제언하는 행위를 의미한다고 하겠다. 최근에는 옹호, 지지, 주창(主唱)을 의미하는 영어 단어 'advocacy(에드보커시)'가 '정책제언' 활동을 설명하는 용어로 널리 사용되고 있다.<sup>4)</sup>

결론적으로 본 연구에서 말하는 '도서관 정책제언'은 도서관 정책 즉, 도서관 운영 및 이용자 서비스를 개선할 수 있는 새로운 방안 혹은 방향을 제시해 주는 행위(활동)를 의미한다.

## 2. 도서관 관련 위원회

### 가. 공공도서관 운영위원회

도서관전문가가 참여 가능한 첫 번째 위원회로는 공립 공공도서관의 운영위원회가 있다. 도서관법<sup>5)</sup>에 근거하여 모든 공립 공공도서관은 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 지역 내 다른 도서관 등 각종 문화시설과 긴밀히 협조하기 위하여 도서관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공공도서관의 운영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것을 규정하고 있는 도서관법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 1〉 도서관법의 공공도서관 운영위원회 관련 조문

---

제30조(공립 공공도서관의 관장 및 운영위원회)
② 공립 공공도서관은 해당 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 각종 문화시설과 긴밀히 협조하기 위하여 도서관운영위원회를 두어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도서관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위의 도서관법에 나타난 바와 같이 모든 공립 공공도서관은 도서관운영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그리고 운영위원회의 구체적인 구성·운영에 관한 내용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

---

4) 이러한 이유 중의 하나는 최근에 NGO 단체들이 자신들의 관심분야에 대해서 '옹호, 지지, 주창하는 행위'(advocacy)가 궁극적으로 관심분야에 대한 정책제언 활동으로 귀결되었기 때문이다.  
 5) 도서관법 [전부개정 2006.10.4 법률 제8029] [일부개정 2009.3.25 법률 제9528].

도록 되어 있다.

아래 <표 2>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sup>6)</sup>에 근거하여 서울시 마포구에 소재하는 S공공도서관이 자체적으로 만든 'S공공도서관 운영위원회 규정'이다.

<표 2> S공공도서관 운영위원회 규정

---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도서관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정한 도서관운영위원회 설치규정(동법률 제30조)에 의거 원  
 활한 도서관정책 수립 및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도서관운영위원회의 구성)

- ① 법 제30조 2항의 규정에 의한 도서관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위원 10인 이  
 상 15인 이하로 구성한다.
- 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③ 위원은 ○○도서관의 장과 당해 도서관의 봉사대상 구역안의 문화계·교육계 전문 인사 및 이용자 중에서 당해 도서  
 관의 장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

제3조(운영위원회의 직무)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도서관운영 및 발전을 위한 기본방침에 관한 사항
2. 도서관운영의 개선에 관한 사항
3. 도서관자료의 구성 방침에 관한 사항
4. 독서운동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5. 지역문화사업 및 평생교육의 지원에 관한 사항
6. 다른 도서관, 문고 및 각종 문화시설과의 업무협력에 관한 사항
7. 기타 도서관 후원에 관한 사항

제4조(운영위원회의 회의)

- ①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위원장은 그 의장이 된다.
- ②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③ 회의는 분기별로 실시하며 회의일자는 해당일 일주일전 개별통보를 한다.

제5조(기타)

본 회의 서기로 ○○도서관 운영과장을 보하며 회의자료 준비 및 회의결과를 종합하는 역할을 한다.

---

위의 규정 중 자관에 근무하는 사서 외에 외부의 도서관전문가가 공공도서관 운영위원회의 위원  
 으로 위촉될 수 있는 여지는 제2조 제3항에 명시되어 있다. 제3항은 "위원은 ○○도서관의(관)장  
 과 당해 도서관의 봉사대상 구역안의 문화계·교육계 전문 인사 및 이용자 중에서 당해 도서관의  
 장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에 의하면 특정 도서관의 위원으로 위촉될  
 수 있는 사람은 도서관의 봉사대상 구역 안에 거주하거나 활동하고 있어야 한다. 그러나 실제로  
 공공도서관들은 지역에 관계없이 외부 인사를 위원으로 위촉하고 있다. 현재 본 연구의 연구자 중  
 한 명은 거주지나 직장과는 전혀 관계없는 세 개 지역에 있는 공공도서관의 운영위원으로 활동하  
 고 있다. 심지어 연구자는 서울시에 거주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기도 소재 공공도서관의 운영위  
 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이처럼 공공도서관들은 자체 규정과 관계없이 외부 인사를 운영위원으로  
 위촉하고 있기 때문에 도서관전문가들이 위원회 참여에 적극적인 태도를 보인다면 얼마든지 공  
 공도서관의 운영위원으로 위촉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6) 서울특별시 마포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조례(조례 제670호 제정 2007.7.26).

한편, 도서관장의 도서관운영위원회 활용 의지에 따라서 도서관계 인사의 도서관운영위원회 참여의 폭은 달라진다. 사서직 관장이 경영하고 있는 서울시 S공공도서관의 경우 총 13명의 운영위원 중 관장을 포함하여 7명<sup>7)</sup>이 도서관전문가들이다. 반면에 행정직 관장이 경영하고 있는 서울시 Y공공도서관의 경우 총 12명의 운영위원 중에서 도서관전문가는 1명<sup>8)</sup>뿐이다.

따라서 도서관전문가가 공공도서관 운영위원회에 참여하여 도서관 관련 정책제언을 한다면 지자체의 도서관 운영에 전문가의 의견이 반영되어, 궁극적으로 지역의 도서관 운영이 합리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공공도서관의 중간경영자와의 인터뷰 결과에 의하면 이러한 주장이 설득력이 있어 보인다.

서울시 교육청 소속 Y도서관의 A과장에 의하면 도서관운영위원의 정책제언의 내용이 실제로 접수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 A과장은 '도서관운영위원이 정책제언을 할 경우 그 제안이 접수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왜냐하면 상위기관인 교육청에서 때때로 도서관운영위원회에서 제안된 의견이 무엇이었으며, 그 의견이 실행되었는지, 그렇지 못했다면 왜 그랬는지에 대해서 감사를 하고 있기 때문이다<sup>9)</sup>'라고 말하였다. 특히, 도서관·정보 분야 최고 전문가인 문헌정보학과 교수들은 도서관의 운영 및 서비스에 대한 참신한 아이디어를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들이 도서관운영위원회에 참가하여 정책제언을 할 경우 이들의 제안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더욱 높다고 하겠다.

한편, 운영위원회에 참여하는 도서관전문가들의 정책제언이 채택 될 가능성이 높은 이유에 대해서 서울시 S공공도서관의 A관장은 이렇게 말하였다.

사회적 지위에서(도서관전문가들은) 어느 정도 운영위원회에 참여하는 여러 위원들 이상의 위치를 갖고 있고, 전문가로서 충분히 객관적이고 일목요연하게 설명 및 의견개진을 함으로써 반대적 의견이 나오기가 힘들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sup>10)</sup>

즉, 교수들은 사회적 지위가 높고, 전문적인 지식을 논리적으로 잘 설명하여 상대방을 설득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현재 도서관운영위원회를 구성하지 않고 있는 서울시 소재 E공공도서관의 관장도 '만약 도서관전문가가 자관의 운영위원회에 참여한다면 도서관 운영이 크게 영향을 받을 것이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면서 '운영위원회에 참여하는 도서관전문가는 도서관에 대한 지식이 없는 상부 관리자나 다른 위원들을 이해시킬 것이며, 도서관 운영의 방향을 제시해 주는 등 도서관의 정체성을 확립

7) 문헌정보학과 교수 2명, 도서관중간관리자 2명, 도서관장 2명, 도서관협회 직원 1명.  
8) 문헌정보학과 교수 1명. 이 도서관의 관장은 행정직이기 때문에 관장을 도서관전문가 수에서 제외하였음.  
9) 2009년 7월 20일 오후에 이루어진 A과장과의 전화 면담 내용임.  
10) '도서관전문가의 공공도서관운영위원회 참여를 통한 정책제언 활동'에 대한 전화질문에 A관장이 이메일로 보내온 답변 내용임.



해 줄 거다'<sup>11)</sup>라고 말하였다. 정동렬(2007, p.247)도 우리나라 위원회 조직은 '전문성이 약하여 중요한 결정 일수록 거수기 역할을 담당하는 경우가 허다하다'라고 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도서관 관련 위원회에서의 도서관전문가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고 하겠다.

#### 나. 학교운영위원회

많은 학교도서관에 운영위원회가 구성되나, 일반적으로 그 구성은 학교의 교직원<sup>12)</sup>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외부 인사가 도서관운영위원회에 참여하는 것은 제한되어 있다. 또한 학교도서관은 그 규모가 작고 실제로 도서관운영위원회의 역할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외부 도서관전문가가 학교도서관 운영위원회에 참여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 오히려 학교도서관 운영에 영향을 미치는 학교운영위원회에 참여하는 것이 의미가 있다. 송기호(2009, p.394)도 '별도의 학교도서관운영위원회를 두는 경우보다(학교운영위원회에서 그 역할을 대신하는 방법이) 예산이나 학사 운영 등 학교 교육과정 전반과 연계하여 학교도서관에 대한 안전을 다룰 수 있기 때문에 보다 실질적인 협의·운영이 가능하다'라고 말하고 있다.

우리나라에 학교운영위원회가 도입된 과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995년 5월 교육개혁위원회가 교육발전 방안의 일환으로 학교운영위원회의 설치·운영을 대통령에게 건의하였다. 그리고 1995년 7월 26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sup>13)</sup>이 개정됨에 따라, 1998년 국공립학교를 시작으로 1999년에는 사립학교에까지 학교운영위원회의 설치가 의무화 되었다. 학교운영위원회의 역할 및 구성에 관한 것은 '초·중등교육법'<sup>14)</sup> 제31~34조에 규정되어 있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학교운영위원회는 학교의 교원 및 학부모 대표 그리고 지역사회 인사로 구성되며, 위원 정수는 5인 이상 15인 이내이다. 주요 기능은 ① 학교현장 및 학칙의 제정·개정, ② 학교 예산·결산, ③ 교육과정 운영 방법, ④ 교과용 도서 및 교육자료 선정, ⑤ 정규학습 종료 후 또는 방학 기간의 교육활동 및 수련활동, ⑥ 초빙교원의 추천, ⑦ 학교 운영지원비의 조성·운용·사용, ⑧ 학교 급식, ⑨ 대학 입학 특별전형 중 학교장 추천, ⑩ 학교 운동부의 구성·운영, ⑪ 학교 운영에 대한 제안 및 건의 등에 관한 사항이다. 이 밖에 학교발전기금의 조성·운용·사용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한다.<sup>15)</sup>

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국립학교와 사립학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공립학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그리고 사립학교의 경우 기타 사항은 정관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다.<sup>16)</sup>

11) 2009년 7월 29일 오후에 이루어진 E공공도서관 관장과의 전화 인터뷰 내용임.

12) 교장, 교감, 행정실장, 각 부 부장, 사서/사서교사.

13)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 1995.7.26] [법률 제4951호, 1995.7.26, 일부개정].

14) 초·중등교육법 [시행 2008.6.22] [법률 제8917호 시행, 2008.3.21, 일부개정].

15) 초·중등교육법, 제31조(학교운영위원회 설치), 제32조(기능).

16) 초·중등교육법 [2008.6.22] [법률 제8917호 시행, 2008.3.21, 일부개정], 제34조(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운영).

학부모들이 학교운영위원회에 참여 할 수 있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모든 학교는 새학기 초인 3월경에 가정 통신문을 통해 모든 학부모들에게 학교운영위원회 참여를 요청하게 된다. 최근 들어 일반 시민들의 사회 활동 참여가 점차 보편화되면서 많은 학부모들이 학교운영위원회 활동에도 관심을 보이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표면적으로는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지원 경쟁률이 높아 보인다. 그러나 실제로는 지원자가 많지 않기<sup>17)</sup> 때문에 학부모들이 학교운영위원회에 참여하고자 하는 뜻을 적극적으로 피력하면 지원자는 대부분 위원으로 선발될 수 있다.

한편, 학부모들이 학교운영위원회에 참여할 경우 다음과 같은 이점이 있다. 일반 학부모의 경우 학교 운영과 교육 내용 및 방법에 대한 공식적인 요청이나 제안을 하기가 상당히 부담스럽고, 또한 의견 제시 및 제안을 하더라도 잘 수용되지 않는 경향이 있다.<sup>18)</sup> 그러나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할 경우 학교장 및 교사들과 거의 동등한 혹은 상위의 위치에 있기 때문에 충분한 의견개진이 가능하다. 또한 학교운영위원회는 ‘국·공립학교의 경우에는 의결기관적 성격을 가진 심의기관이며, 사립학교의 경우에는 심의기관적 성격을 가진 필수적 자문기관’<sup>19)</sup>이기 때문에 운영위원회 위원은 학교의 운영에 대해서 당당하게 자신의 의견을 밝힐 수 있다.

또한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된 학부모는 일반적으로 월 1회 학교운영에 관한 심의와 의결을 위한 회의에 참석하게 되는데, 학부모 위원은 이러한 회의 참석을 통해 학교가 행정적으로 어떻게 운영 되는지에 대해서 많은 것을 알게 된다.

결론적으로 도서관전문가가 학교운영위원회에 학부모위원으로 참여하게 되면 학교가 행정적으로 어떻게 운영되는지를 알게 되고, 이 과정에서 학교도서관의 운영과 사서/사서교사 배치에 대해서 정책제언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학교장과 다른 운영위원들에게 학교도서관의 중요성과 사서/사서교사 배치의 필요성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 다. 대학도서관 운영위원회

우리나라의 거의 모든 대학도서관(일부 학술정보관)은 자관의 도서관규정(〈표 3〉, 〈표 4〉 참조)

- 17) 지원자가 많지 않은 이유는 첫째,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 학교운영위원회 활동에 대한 인식이 좋지 않다. 많은 학부모들은 학교운영위원회가 본래의 기능을 수행하기 보다는 학교장 및 교사들과의 친분을 쌓기 위한 자리로 인식하고 있다. 본 연구의 연구자 중 한명도 자녀의 학교도서관 운영에 관심을 보이기 위해 학기 초에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지원 신청서를 제출했다가 주위 사람들의 만류로 지원을 철회한 경험이 있다. 둘째, 본문에서도 밝힌 것처럼 운영위원회 모임이 주로 낮에 개최되기 때문에 직장이 있는 남자들의 지원이 거의 없는 상태에서, 여성인 주부들은 약간의 무게감이 있는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활동에 대해서 많은 부담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지원을 많이 하지 않는다.
- 18) 본 연구의 저자 중 한 명이 자녀 학교의 아버지회 모임에 참석한 적이 있다. 그런데 교장 선생님은 아버지들과의 모임에서 일방적으로 학교의 요구사항만 전달하고, 학부모로부터 필요한 도움만 요청하는 식의 대화를 이끌었다. 또한 참석한 아버지들과의 대화 방식은 자신만이 교육에 대해서 가장 많이 알고 있다는 식으로 상당히 권위적이었다. 이러한 내용을 토대로 볼 때 모든 학교의 교장선생님이 다 똑같지는 않겠지만 많은 학교에서 일반 학부모들의 학교 운영에 대한 의견이 수렴되기는 어려워 보인다.
- 19) 김성열, “학교교육의 제도적 조건으로서의 학교운영위원회 : 제도의 도입과 정착, 활성화,” 교육인류학연구, 제4권, 제2호(2001), pp.71-129.

에 근거하여 운영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있다. 따라서 대학도서관 운영위원회는 도서관전문가들이 참여하여 정책제언 활동을 할 수 있는 또 하나의 영역이라고 하겠다.

그러나 대학도서관 규정(표 3, 표 4 참조)에 의하면 도서관운영위원회는 자체 대학의 교직원을 중심으로 구성·운영되는 것이 일반적이어서 전문성을 지닌 학교 밖 외부 도서관계 인사의 참여는 사실상 제한되어 있는 실정이다.

한편, 현재 우리나라의 많은 대학도서관 운영위원회는 형식적으로 구성·운영되어 그 본연의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연구자가 직접 대면하거나 전화로 인터뷰한 대학도서관 중간경영자들의 답변이 이 주장을 잘 뒷받침 해주고 있다.

S대학도서관의 팀장은 자관의 운영위원회 활동에 대해서 '도서관 규정에 의해서 운영위원회가 구성·운영되고 있지만 운영위원들의 도서관 운영에 대한 이해가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위원들의 활동이 도서관 운영에 도움을 주기에는 한계가 있다'<sup>20)</sup>고 말하였다. 그러면서 '외부 도서관전문가 몇 사람을 도서관 운영위원회에 초빙한다면 현재 도서관 비전문가들로만 구성된 운영위원회 활동의 문제점을 일부 보완할 수도 있겠다. 그러나 현재의 대학 및 도서관 규정 즉, 본교 교직원에 한해서 운영위원을 위촉할 수 있는 제도를 보완하지 않고서는 곤란하다'고 하였다. 그런데 흥미롭게도 S대학도서관 팀장은 본교 교직원이 아닌 외부 도서관전문가를 운영위원으로 초빙하는데 따른 문제점을 보완하는 차원에서 '본교 출신(동문)의 외부 도서관전문가를 운영위원회에 초빙하는 것을 고려해 본적이 있다'고 말하였다. S대학도서관 팀장이 말한 것처럼 도서관 비전문가들로 구성된 도서관운영위원회는 운영상의 한계점이 있고, 따라서 이 한계점을 보완하는 차원에서 외부 도서관전문가를 초빙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다고 하겠다.

D대학도서관의 팀장도 자관의 도서관 운영위원회에 대해서 한 마디로 '유명무실하다'라고 말하면서, '2009년 지난 반년 동안 한 번도 운영위원회가 소집되지 않았다. 2학기 때에나 회의를 소집할 계획이다'<sup>21)</sup>라고 하였다. 그러면서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으나 외부 도서관전문가의 대학도서관 운영위원회 참여에 대해서는 '대학도서관의 발전을 가져올 수 있는 상당히 좋은 방안이다'라고 하였다.

M대학도서관의 팀장도 '도서관전문가 없이 단과대학에서 한 명씩 위촉된 교수들로 구성된 운영위원회의 역할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sup>22)</sup>라고 말하였다. 그러면서 도서관전문가가 운영위원회에 참여한다면 '도서관에 상당한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다'라고 말하면서 도서관전문가의 운영위원회 참여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결론적으로, 앞으로는 대학도서관들이 운영위원회를 구성할 때 가급적이면 외부 도서관전문가를 초빙하여 운영위원회가 본래의 기능을 수행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겠다. 이렇게 되면 학교의 입장에서는 도서관 운영에 도서관전문가의 의견과 참신한 아이디어를

20) 2009년 7월 22일 오후에 이루어진 S대학도서관 팀장과의 전화 인터뷰 내용임.

21) 2009년 7월 30일 오후에 이루어진 D대학도서관 팀장과의 전화 인터뷰 내용임.

22) 2009년 7월 29일 오후에 이루어진 M대학도서관 팀장과의 대면 인터뷰 내용임.

적용하여 도서관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가능할 것이다. 그리고 사서들의 입장에서는 외부 도서관전문가가 자신(사서)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학교에 도서관 정책제언을 한다면 도서관 운영에 사서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는 것이 가능할 것이다. 궁극적으로 외부 도서관전문가의 대학도서관 운영위원회 참여는 대학도서관, 더 나아가서는 우리나라 도서관의 발전을 가져 올 것이다.

한편, 이와 같이 학교 밖 외부 도서관전문가를 자관의 운영위원으로 위촉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사서들의 의지가 중요하다. 왜냐하면 사서들은 대체로 외부 도서관계 인사가 자관 운영에 개입하는 것을 꺼리고, 학교당국은 외부 도서관전문가의 필요성을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대학도서관 운영위원으로 외부 도서관계 인사를 초빙하는 데는 사서들의 노력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하겠다. 또한 학교 밖 외부 도서관전문가를 초빙하기 위해서는 위에서도 언급한 것처럼 외부인을 대학의 각종 운영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아래 <표 3>과 <표 4>는 일부 대학의 대학도서관규정 중 도서관운영위원회에 관한 내용이다.

<표 3> 건국대학교 도서관규정의 일부 내용

---

제2장 운영위원회

제4조(도서관운영위원회) 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도서관 운영위원회를 두며, 그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5조(운영위원회의 구성)

- ① 상허기념도서관 운영위원회는 부총장, 도서관장, 기획조정처장, 연구처장, 정보통신처장, 법과대학장, 조교수 이상의 교원 및 참사 이상의 직원 중에서 총장이 위촉하는 위원(5인 이하)으로 구성한다.(개정 2003.6.24, 2007.2.1, 2007.11.19)
- ② 중원도서관 운영위원회는 부총장, 도서관장, 기획조정처장, 교무처장, 학생인력개발처장과 조교수 이상의 교원 및 부참사 이상의 직원 중에서 총장이 위촉하는 위원(5인 이하)으로 구성한다.(신설 2007.2.1)
- ③ 위원장은 부총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도서관장으로 한다.(신설 2007.2.1)

제6조(운영위원회의 기능) 운영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도서관의 시설 및 운영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도서관 규정 개정에 관한 사항
3. 기타 필요한 사항

제7조(회의) 위원회는 학년 초에 정례회의를 가지며, 위원장은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

<표 4> 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규정의 일부 내용

---

제5장 운영위원회

제28조(위원회 설치) 도서관의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도서관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29조(위원회의 구성)

- ① 위원회는 부총장, 관장, 교무처장, 학생처장, 연구처장, 기획실장, 분관장, 사무국장, 시설관리국장 및 발전기금상임이사를 포함한 1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② 위원장은 부총장이 된다.
- ③ 제1항에 규정된 당연직 이외의 위원은 본교 교수, 부교수 중에서 관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한다.

제30조(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회무를 통괄하며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제31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도서관 운영에 관한 기본 방침
2. 도서관 규정의 제정 및 개폐
3. 자료의 선정기준 및 폐기기준
4. 기타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2조(회의)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 3. 도서관전문가의 위원회 참여를 통한 정책제언 활동의 기대 효과

도서관전문가의 각종 도서관 관련 위원회 참여는 미시적으로는 자체 도서관의 운영과 서비스를 제고하는데 그 목적이 있고, 거시적으로는 사회의 중요한 공공시설인 도서관의 가치를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다. 도서관에 대한 필요성은 시민들을 상대로 한 각종 설문조사<sup>23)</sup>에서도 상위를 점하고, 각종 민원의 주요 대상으로 등장하는 등 도서관의 가치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은 높은 편이다. 그러나 전문직으로 근무 하는 사서에 대한 존재감은 도서관의 필요성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 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시민들이 도서관과 사서 둘 다에 대해서 같은 수준의 중요성을 인식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도서관전문가들이 도서관 관련 각종 위원회에 참여하여 정책제언 활동을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현재 도서관계의 새로운 논의 중의 하나이다. 왜냐하면 본 연구에서 소개한 것처럼 이미 몇몇 공공도서관에서 도서관전문가들이 운영위원회에 참여하여 도서관의 필요성과 사서의 중요성을 강조함으로써 시민들의 도서관에 대한 인식이 좋아지는 결과를 낳은 사례가 있기 때문이다. 또한 21세기는 정부와 시민 그리고 다른 기관들이나 단체가 서로 협력하여 공공서비스를 발전시켜나가는 거버넌스(governance)<sup>24)</sup>의 시대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 가. 정성적 기대효과(quantitative benefit)

과거 도서관에 대한 사회적 인식은 학습공간 혹은 단순히 책을 빌리는 공간이었다. 그러나 도서관전문가들이 도서관 관련 위원회에 참여한다면 도서관은 이제 더 이상 과거의 모습이 아닌 정보전문가를 통해 정보습득 등이 이루어지는 도서관 본연의 모습으로 돌아가는데 큰 기여를 할 것이다. 특히, 도서관의 중간간부급 사서들이 도서관 관련 위원회에 참여한다면 그 효과는 더욱 극대화되고, 궁극적으로 도서관의 가치 상승이 더욱 확산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이다.

그리고 도서관전문가들의 각종 위원회 참여는 학교도서관의 담당자가 사서보조원, 행정원, 기간제로서의 인식에서 진정한 사서교사로 자리 매김 되고, 공공도서관의 사서는 대출반납 전담이 아니라 정보컨설턴트가 가능한 우수한 컨설턴트로 자리 매김이 될 것이다. 그리고 대학도서관의 사서는 대학의 핵심 사업, 연구 그리고 각종 프로젝트에 가장 소중한 파트너로 자리 매김 될 것이다. 이 모든 것이 가능하게 할 최상의 방법은 도서관전문가들이 직접 도서관 관련 위원회에 참여하는 것

23) 2007년 마포구에서 구민들을 상대로 '구 관내에서 가장 필요한 공공시설'에 대한 수요조사에서 도서관이 두 번째로 가장 높았음.

24) '함께 다스림(governance)'은 어떤 문제를 해결하거나 정책을 결정하는 데 과거와 같이 정부가 일방적이거나 정부 주도적으로 결정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문제나 정책에 대해 이해관계를 공유하는 모든 집단이나 관계자들이 함께 참여하고 결정하여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것. 김석준 등, 거버넌스의 이해(서울 : 대영문화사, 2002), p.246.

이고, 그 결과 모든 도서관에서 사서의 전문성에 대한 인식은 지금보다 훨씬 크게 확대 될 것이다.

나. 정량적 기대효과(qualitative benefit)

현재 우리나라의 도서관계는 모든 관중에 걸쳐 매우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들에 봉착해 있다. 학교도서관의 경우 사서교사 모집 정원이 2~3년전 백여 명에서 2008년엔 한 자리 수로 줄었고, 공공도서관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충정원제 그리고 총액임금제 적용으로 신규 정규 직원의 채용이 없는 상태에서 인턴사원의 채용이 늘고 있고, 심지어는 공석마저 채우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대학도서관의 경우도 구조조정으로 지난 몇 년 동안 신규직원의 채용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가운데, 심지어는 사서들의 보직이 행정 업무로 변경 되는 등 사서의 존재감과 역할의 중요성이 약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의 이러한 상황을 고려할 때 도서관전문가들의 도서관 관련 위원회 참여는 절실히 요구된다고 하겠다. 왜냐하면 도서관전문가들은 도서관 운영에 영향을 미치는 사람들과 운영위원회의 다른 위원들에게 도서관에서 사서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잘 설명할 수 있기 때문이다. 즉, 도서관전문가들은 도서관 운영과 서비스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사서이고, 사서의 역할 유무에 따라서 도서관의 기능이 강화되고, 그리고 사서의 업무 수행은 도서관을 이용하는 이용자나 도서관을 운영하는 경영자들에게 많은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설득력 있게 설명할 수 있는 사람들이다. 결과적으로 도서관전문가들의 위원회 활동은 도서관 직원의 신규 채용과 충분한 예산 확보, 더 나아가 도서관의 신규 사업에 대한 지원까지 이끌어 낼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실제로 서울시 S공공도서관의 경우 문헌정보학과 교수, 도서관의 사서직 중간경영자 그리고 도서관 전문단체의 직원 등 많은 도서관전문가들을 운영위원회 위원으로 초빙하고 있다. 이 결과 이들의 정책제언 활동은 도서관의 가치 천명은 물론이고 S도서관의 각종 사업증대, 자료확충, 서비스 제고에 있어서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 아래 <표 5>는 S도서관장이 밝힌 자관 운영위원회에 참여하고 있는 도서관전문가 위원들의 정책제언 활동의 내용들이다.

<표 5> 도서관전문가 위원들의 정책제언 활동 내용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도서관의 필요성 및 중요성에 대한 강력한 의견 개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구 관내 도서관 인프라 부족의 문제점 대한 강력한 의견 개진</li> <li>- 주민요구 대표시설로서의 도서관에 대한 지원의 필요성 주장</li> </ul> </li>   <li>■ 예산신청 근거 및 심의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공기관 예산삭감 요인 해소 적극 지원</li> <li>예 : 2009년도 요청 예산안 대부분 수용 결과 얻어냄</li> <li>- 도서관 사업의 성공을 위해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해 강력 지원</li> <li>예 : 도서관구입비에 대해 최우선순위 설정 및 추경에 적극 반영</li> </ul> </li>   <li>■ 도서관 주요기능 비전문가 집단(구청 및 구의회)에 적극 설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독서실 인식수준에서 도서관 및 정보센터로 인식하게끔 함</li> </ul> </li> </ul>
--

---

- 
- 장서개발에 대한 전반적 인식 개선  
예 : 이용자 분석에 의한 장서개발 필요성 제시
  - 도서관에 있어 소통의 필요성과 참고봉사에 대한 의미 설명  
예 : 시스템적 요소가 아닌 이용자와 소통을 통해 도서관 가치 부각 필요성 설명 후 사서의 단순 대출·반납 역할자로서의 인식에서 정보전문가 인식 제고
- S도서관의 사회적 위치 객관적 제시
- 업무의 질 및 양의 상대적 평가를 통한 S도서관 위치 조명  
→ 예 : 소속인원 대비 대출·반납량 비교분석 후 1.3배의 과중업무 지적  
→ 예 : 일일실물수서, RFID열람분석, 이중 도서관협력 등은 타도서관에서 진행되지 않은 소중한 특화사업임을 전문가 외의 운영위원회에 설명
  - 정보소의 및 사회단체와의 적극적 협력을 통한 지역에서의 도서관 위상 재정립 필요성 개진
- 도서관 환경 개선에 대한 의견 적극 개진
- 직원복지 부문에 대한 적극적 의견 개진으로 구청의 제어적 역할이 아닌 지원적 역할로 방향 전환
  - 도서관에서 필요하고 부족한 시설과 설비에 대해 객관적으로 필요성 개진
- 

또한 이러한 활동은 해당도서관 안팎의 자원 확보에 지대한 공헌을 하고, 나아가 타 도서관에 좋은 모범 사례로 보임으로써 과거의 마이너스식, 도미노식 예산 배정<sup>25)</sup>이 플러스식, 확산바이러스식 예산 배정<sup>26)</sup>으로 바뀔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것이다.

대학도서관의 경우 외부 도서관전문가를 자관 운영위원회에 초빙함으로써 도서관의 위상을 한 단계 끌어올릴 수 있는 계기를 마련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사회 변화에 도서관이 신속히 대처할 수 있는 좋은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가능할 것이다. 또한 자체도서관의 효율적인 예산 운용은 물론, 동종 도서관간 자료의 공동구매, 자원공유, 상호대차와 같은 도서관 협력을 이끌어낼 것이다. 그리고 자관 예산의 삭감을 방지하여 현재 예산의 유지 혹은 확대를 할 수 있는 방안도 모색 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환율급등으로 인해 많은 어려움에 처한 대학도서관의 경우 같은 관중에 근무하는 외부 도서관전문가를 자관의 운영위원회에 참여시킴으로써 공동의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찾아낼 수 있을 것이다.

#### 4. 도서관전문가의 위원회 참여를 통한 도서관 정책제언 활동의 한계점

도서관전문가들이 도서관 관련 각종 위원회에 위원으로 참여하여 정책제언 활동을 한다면 이들의 활동은 일차적으로 개별 도서관을 발전시키고, 궁극적으로 국가 전체의 도서관 발전을 가져올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 가정은 도서관 관련 개별 위원회가 본래의 목적대로 잘 운영되는 것이

---

25) 마이너스식 예산 배정 방법 : 신설도서관의 경우 상위 기관(예들 들면 지자체 소속 도서관의 경우 지자체)에서 개관 초기에는 충분한 예산을 배정한 후 차기 연도부터 예산배정을 줄이는 방식. 도미노식 예산 배정 방법 : 조직 우선순위에 밀려 모기관 예산 삭감시 도서관 예산도 함께 삭감되는 방식.  
26) 플러스식 예산 배정 방법 : 예산 배정을 매년 늘리는 방식. 확산바이러스식 예산 배정 방법 : 모기관 혹은 한 부서의 예산 증액에 따라서 다른 부서의 예산 배정도 함께 증가시키는 방식.

전제되어야 한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에서 도서관 관련 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사람들이 도서관 관련 각종 위원회에 참여하는 이유는 위원회 활동을 적극적으로 하거나, 활동 분야에 대한 정책제언을 하기 위해서라기보다는, 자신들의 사회적 신분이나 직위를 과시하거나 혹은 권유에 의해 마지못해 참여하는 등 위원회 활동을 단순히 형식적 요식행위로 인식하는 경우가 많다. 실제로 몇몇 공공도서관을 제외하고는 공공도서관의 법적인 기구인 많은 운영위원회가 위원들의 친목도모를 위한 활동으로 변질되어 운영되는 경우가 있다. 또한 학교운영위원회의 경우도 법적인 기구임에도 불구하고 낮에<sup>27)</sup> 운영위원회를 개최함으로써 직장인 학부모의 위원회 참여를 근본적으로 차단하는 경우가 많다. 또한 도서관 현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일반 사서 출신의 도서관 전문가들도 낮에는 각자의 도서관에서 바쁜 일과를 보내고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다른 도서관의 운영위원회에 참여하는 것이 어렵다.

#### IV. 위원회 참여를 통한 도서관 정책제언 활동 방안

##### 1. 도서관전문가의 도서관 관련 위원회 참여

도서관전문가들 중 도서관 관련 각종 위원회에 참여하여 도서관 발전을 위한 정책제언을 할 수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분석하였다.

일반적으로 도서관 관련 위원회는 사회에서 전문직에 종사하는 지식인과 여러 기관의 최고 혹은 중간경영자를 위원으로 위촉하는 경향이 있다. 이에 따라 본고에서는 도서관계에서 지도자 위치에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이들의 도서관 관련 각종 위원회 참여와 위원회에서의 도서관 정책제언 활동의 가능성을 모색해 보았다.

##### 가. 문헌정보학과 교수

우리나라의 문헌정보학과 교수들은 도서관과 사서의 위상을 높이거나 바로잡아줄 핵심 집단으로 판단된다. 왜냐하면 첫째로, 교수들은 어느 사회에서나 사회지도층으로 분류되어 사회적 영향력을 가지고 있으며, 둘째, 문헌정보학 분야 최고의 지식인들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들이 도서관 관련 위원회에 참여하여 도서관 발전에 대한 정책제언을 한다면 그 의견이 충분히 수용 될 수 있을 것이다.

2009년 현재 우리나라에는 43개<sup>28)</sup> 대학의 문헌정보학 및 관련 학과에 170여명의 교수들이 재직

27) 영국의 많은 학교의 경우 밤에 학교운영위원회를 소집하고 있다.

28) 4년제 대학 33개 학과, 전문대학 6개 학과, 기타 대학 문헌정보학 관련 4개 학과.



하고 있다. 따라서 이들은 우리나라의 도서관 관련 각종 위원회에 참여하여 도서관 정책제언 활동을 할 수 있는 잠재적 자원이라고 하겠다. 이들 문헌정보학과 교수들은 자신들의 자녀가 재학하고 있는 초·중·고등학교 학교운영위원회, 거주 지역의 공공도서관 운영위원회 그리고 자신들이 재직하고 있는 혹은 다른 대학의 도서관운영위원회에 참여하여 도서관 정책제언을 할 수 있을 것이다.

#### 나. 도서관의 사서직 경영자

대학의 문헌정보학과 교수들과 함께 도서관 관련 각종 위원회에 참여하여 도서관 정책제언 활동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는 도서관의 사서직 최고 및 중간경영자들을 들 수 있다. 이들을 도서관 관련 위원회에 참여 가능한 사람으로 분류한 이유는 이들이 도서관의 최고 및 중간경영자로 사회에서 어느 정도의 위치에 있고, 도서관에서 오랫동안 근무하여 도서관에 대한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연옥(2002)도 사서 중 특정 계층을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도서관 발전을 위한 도서관 운동에서 사서가 주체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따라서 현장의 사서들 특히, 최고 및 중간 경영자들은 도서관 발전을 위한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필요가 있겠다.

사서직 최고 및 중간경영자들은 대학도서관과 공공도서관에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문헌정보학과 교수 신분의 대학도서관 관장을 제외하고 사서출신의 관장이 있는 대학은 매우 드물다. 따라서 대학도서관에서 각종 위원회에 참여 가능한 사람들은 사서직 과장(팀장)들이라고 하겠다. 일반적으로 우리나라 대학도서관의 경우 사서직 과장(팀장)이 2명 이상 되는 곳이 많다. 아래 <표 6>은 현재 우리나라에서 도서관 관련 위원회에 참여 가능한 대학도서관의 중간경영자 수를 예측한 것이다.

한편, 최근에 일부 대학도서관에서 인력감축과 사서들의 일반 행정부서로의 이동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대학도서관의 중간경영자들은 이러한 상황을 직시하여 도서관의 내실을 강화하기 위해, 자관과 다른 대학도서관 및 공공도서관 그리고 다른 기관과의 협력체제 구축을 위해서 도서관 관련 위원회 등에 적극 참여하거나, 외부 인사를 자관의 운영위원으로 초빙할 필요가 있겠다.

<표 6> 대학도서관 수와 대학도서관의 예상 중간경영자 수

구 분	국공립대학	사립대학	전문대학	각종학교 <sup>29)</sup>	계
도서관수(2008) <sup>30)</sup>	101	252	150	25	528
중간경영자 수	202	504	150	25	881 <sup>31)</sup>

공공도서관의 경우 지자체의 총정원제 및 총액임금제 등으로 인해 더 이상의 인적자원 확보가

29) 한국예술종합학교, 경찰종합학교, 경기도소방학교, 육군종합행정학교 등과 같은 고등 교육기관.

30) 한국도서관협회, 2008 한국도서관연감(서울 : 한국도서관협회, 2008).

31) 국공립대학과 사립대학은 그 소속 도서관의 규모가 크기 때문에 중간경영자 수를 한 학교당 2명씩 계산하였고, 전문대학과 각종학교는 그 소속 도서관이 규모가 작기 때문에 한 학교당 1명씩 계산하였음.

곤란한 상황이다. 또한 공공도서관의 행정체계 일원화 등의 문제로 인해 전체 공공도서관의 내부합의마저 순조롭지 못한 상황에 처해 있다. 따라서 이러한 상황 속에서 사회적 공공기관으로의 기능을 되살리고 내외부 역량 결집을 위해서는 공공도서관의 최고 및 중간경영자들은 다른 도서관 위원회에 직접 참여하거나 혹은 외부 도서관전문가들을 자관의 운영위원회에 초빙할 필요가 있겠다.

공공도서관에는 대학도서관과 달리 사서직 관장이 많이 있다. 그리고 규모가 큰 도서관의 경우에는 한 도서관에 최소한 2명 이상의 사서직 중간경영자가 있고, 소규모 도서관의 경우에는 한 명의 사서직 중간경영자가 있는 경우가 있다. 따라서 도서관 관련 위원회에 참여 가능한 공공도서관의 중간경영자 수를 예측하면 지자체 및 교육청 소속 도서관의 경우 한 도서관 당 2명씩으로 계산하면 되겠다. 그리고 사립도서관의 경우 그 규모가 작기 때문에 중간경영자의 수를 한 도서관 당 1명으로 계산하였다. 아래 <표 7>은 우리나라에서 도서관 관련 위원회에 참여 가능한 공공도서관의 최고 및 중간경영자 수를 산출한 것이다.

<표 7> 공공도서관 수와 공공도서관의 예상 중간경영자 수

구 분	지자체	교육청	사립	계
도서관수(2008) <sup>32)</sup>	354	227	19	600
중간경영자 수	708	454	19	1,181

다. 중앙부처 도서관 및 관련 전문단체 간부

문헌정보학과 교수 그리고 도서관의 최고 및 중간경영자 외에 도서관 관련 위원회에 참여하여 도서관 정책제언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또 있다. 이들은 도서관의 최고 및 중간경영자와 일부 중복되는 경우가 있는데, 중앙부처의 사서직 공무원, 전문도서관의 사서직 간부 그리고 도서관 관련 각종 협회, 도서관 관련 사단법인 및 재단법인 등에서 관련 업무를 수행 하고 있는 사람들이다.

중앙부처의 사서직 공무원으로서는 문화부의 도서관정보정책기획단, 국립중앙도서관, 국회도서관, 법원 및 헌법재판소 도서관 등에서 근무하는 사서들을 들 수 있다. 이러한 기관에서 근무하는 도서관전문가들 중 도서관 관련 각종 위원회에 참여하여 활동할 수 있는 사람의 수는 이들 도서관의 전체 인력 중 절반 혹은 1/3 수준<sup>33)</sup>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지방직 사서공무원으로는 서울시나 교육청 그리고 각 도에서 도서관 정책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 이들 중 일부도 도서관 관련 위원회에 참여하여 도서관 정책제언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전문도서관에서 도서관 관련 위원회에 참여하여 정책제언을 할 수 있는 사람의 수를 정확히 파

32) 한국도서관협회, 2008 한국도서관연감(서울 : 한국도서관협회, 2008).

33) 이들 도서관의 전체 인력 중에서 행정직 직원을 빼면 외부 위원회 활동에 참여 가능한 사람(사서직)의 수는 전체 인력의 1/2 혹은 1/3 수준이 될 것으로 판단됨.

약하기는 어렵지만 대덕연구단지의 거의 모든 연구소에 사서가 근무하고 있고, 국가연구기관에도 사서직이 진출하여 있는 것을 고려할 때 초·중·고등학교 운영위원으로 참여 가능한 도서관전문가가 상당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한국도서관협회, 경기문화재단, 인천문화재단 등에 소속된 사서들 중 일부도 학교운영위원회 등에 참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재단법인으로는 책읽는사회문화재단, 느티나무도서관재단 등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서들도 도서관 관련 위원회 등에 참여하여 정책제언 활동을 할 수 있을 것이다.

## 2. 위원회 참여 활동의 기본 지침

도서관 관련 위원회에서 활동하는 도서관전문가는 기본적으로 그 조직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특히, 예산업무에 대한 최소한의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하겠다. 예를 들면, 학교운영위원회에서 학교의 예산안을 심의 할 때 위원회에서의 이러한 활동들이 형식적으로 진행 될 것을 대비하여 사전제어 혹은 검토의 차원에서 예산안 발의 최소 1주일 전에 위원회에 예산안을 제출할 것을 의무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많은 위원회가 청탁과 인간관계 등으로 얽혀 있기 때문에 객관적이고도 합리적인 업무 절차를 마련하도록 한다. 특히, 공공도서관이나 학교의 경우 운영위원회 설치가 법률로 정해진 중요한 기구임에도 불구하고, 그 운영이 관장이나 교장 한 사람에 의해 좌지우지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따라서 도서관전문가 위원은 각종 사안에 대한 심의 및 논의에 있어서 명백하고도 단호한 입장을 개진하여 학교, 학부모, 학생 모두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을 제안하여야 하겠다.

### 가. 공공도서관 운영위원회 활동

공공도서관의 운영위원회는 도서관 관련 대표적인 전문위원회라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대학도서관의 경우 운영위원회가 유지되는 곳이 있지만 외부인사 특히, 도서관전문가의 참여가 현재에는 어려운 상태이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는 공공도서관 운영위원회 참여방안과, 참여시 주요 활동 방안에 대해서 설명하고자 한다.

먼저, 위에서 설명한 것처럼 도서관의 간부급 이상의 사서들은 공공도서관 운영위원회에 쉽게 참여 할 수 있다. 다만, 학생 자녀를 둔 학부모인 간부급 사서들은 자신들의 활동의 방향을 학교도서관에 맞추는 것이 좋겠다. 왜냐하면 학부모들의 경우 학부모가 아닌 사람들에 비해 학교운영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그리고 대학의 교수 혹은 은퇴 교수 그리고 국가의 주요 도서관<sup>34)</sup>의 사서들은 공공도서관 운영위원회에 참여하는 것이 도서관전문가들의 위원회 참

34) 국립중앙도서관, 국회도서관, 법원도서관, 헌법재판소도서관, 기타 국가 주요 연구소자료실.

여의 역할을 분담하는 의미에서 좋을 것 같다.

공공도서관 운영위원회를 통해 취할 수 있는 적극적 정책제언 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선진국 및 국내에서 도서관 운영이 잘 되고 있는 지역의 도서관 현황 및 정책에 대해 분석한 자료를 가지고 있도록 한다. 이러한 자료는 필요시 해당 도서관에 요청하면 제공받을 수 있다.

둘째, 예산 지원 및 활용에 대한 정확한 분석을 한다. 이를 위해 다른 도서관의 관장 및 중간경영자(사서)들과 긴밀히 협조한다.

셋째,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예산을 담당하는 지자체 의회의 의원과 자금 집행지원을 담당하는 지자체의 국, 과장의 위원회 위촉을 기본 사항으로 정하여 위원회 운영 조례에 포함시킨다.

넷째, 도서관 운영에 대한 분석, 질의에 이은 대안제시를 순차적으로 실시하여 설득력 있는 정책 제안을 한다.

다섯째, 필요에 따라 지자체의 도서관 최고 관리자(구청장)와의 면담도 요청하고, 직접 찾아가서 도서관의 중요성과 기타 지원 사항을 요청하도록 한다.

여섯째, 위원회가 개최되는 날 잠깐 회의에 참석하는 것으로 그 역할이 끝난다고 생각하지 말고, 실제 도서관 운영의 한 부분을 맡는다는 생각으로 가능하면 비정기적이더라도 꾸준히 해당 도서관과 소통하도록 한다.

일곱째, 효율적인 도서관 운영을 위해서는 인적자원, 즉, 충분한 사서의 배치가 필수적이며, 업무의 과중을 살펴 적절한 사서가 배치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위원회에서 지속적으로 주장한다.

#### 나. 학교운영위원회 활동

학교도서관은 학교운영위원회나 교장의 결정 및 지시에 의해 그 운영과 각종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경향이 있다. 학교도서관의 운영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고 발전방향을 제시해 주기 위해서는 학교의 핵심 기구인 학교운영위원회가 그 역할을 제대로 하여야 한다. 특히, 학교 내 예산의 배정, 심의, 집행 등에 있어서 교장과 행정실이 기존의 업무처리방식을 고집할 수 있기 때문에 새롭게 운영위 활동을 시도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따라서 학교운영위원회에 참여하는 도서관전문가는 학교의 행정 절차에 대해 먼저 충분히 이해하고, 시간을 두고 인내하며 각종 현안에 대처할 필요가 있다.

아래 내용은 학교운영위원회 내에서 효과적으로 운영위 활동을 하는 방안에 대한 소개이다.

첫째, 위원회에 참여하는 도서관전문가는 가능하면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 적극 진출하여 교장과 동등의 자격을 갖춘다.

둘째, 지난해의 학교행정 및 위원회 활동에 대해 치밀하고도 철저한 분석을 한다.

셋째, 학교, 학부모, 학생 모두에게 도움이 되도록 최상의 객관적 정책안을 준비한다.

넷째, 과거의 관행에 집착하는 교장, 교사, 학부모위원들과 잘 소통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인다.

다섯째, 도서관의 중요성을 지속적으로 최소한 3개월 이상 이해·설득시킨다.

여섯째, 학교장, 교사 그리고 다른 위원들에 대한 설득을 통해 전체 합의하에 도서관운영 지원에 대한 내용을 성문화 하도록 한다.

#### 다. 대학도서관 운영위원회 활동

현재 우리나라의 거의 모든 대학에 도서관운영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으나 그 역할은 미약한 실정이다. 그리고 문헌정보학과가 있는 대학을 제외하고 다른 대학에서 도서관운영위원회에 자관의 사서를 제외한 도서관전문가가 참여하고 있는 곳은 없다. 그런데 외부 도서관전문가가 대학도서관 운영위원회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먼저 외부전문가가 대학의 각종 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대학과 도서관의 규정이 마련되어야 한다.

결론적으로 도서관전문가가 대학도서관 운영위원회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먼저 대학의 규정과 도서관운영위원회에 관한 규정이 수정되어야 한다. 한편 이러한 규정이 수정되기 위해서는 대학도서관의 사서들의 생각이 바뀌어야 하겠다. 즉, 사서들이 S대학교 도서관처럼 외부 도서관전문가를 자관의 운영위원으로 초빙하려고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 V. 끝맺는 말

현재 우리나라의 도서관계는 대내외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들에 직면해 있다. 외부적으로는 다원화된 사회 속에서 중앙 및 지방정부의 도서관에 대한 관심부재와 시민들의 도서관의 중요성 및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여전히 부족한 상태이다. 내부적으로는 관종별 관심분야의 차이로 공동의 목표가 약해 이로 인해 도서관계의 총체적인 문제해결을 위해 힘을 결집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도서관계의 발전을 위해서는 도서관계의 모든 사람들이 각자 맡은바 역할에서 최선의 노력 다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도서관계에서 지도적 위치에 있는 도서관전문가들이 사회에서 활발하고도 적극적인 활동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도서관전문가들이 참여하여 도서관의 발전을 가져올 수 있는 활동 중의 하나가 도서관 관련 각종 위원회라고 하겠다. 도서관 및 학교 운영위원회의 본래 역할은 도서관과 학교의 시설 및 운영에 관한 사항, 규정의 제정 및 개정 그리고 기타 사항 등을 심의하는 매우 중요한 기구이다. 따라서 도서관전문가가 이러한 위원회에 참여한다면 다른 위원들의 도서관의 중요성과 사서의 역할 및 필요성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킬 것이다. 결과적으로 도서관전문가들의 이러한 활동은 도서관의 정체성을 확립하여 도서관을 발전시킬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살펴본 도서관전문가들의 도서관 관련 위원회 참여 방안은 관심분야가 다른 많은 도서관전문가들이 하나의 목표를 위해 화합하고 힘을 결집하여, 궁극적으로 도서관계의

발전을 가져 올 수 있는 좋은 방안이라고 하겠다.

도서관전문가들이 참여하여 도서관 정책제언을 할 수 있는 위원회는 크게 세 가지가 있다. 첫째, 공공도서관 운영위원회, 둘째, 대학도서관 운영위원회, 셋째, 학교도서관 운영에 영향을 미치는 학교운영위원회가 있다.

그리고 도서관 관련 위원회에 참여하여 도서관 정책 제언 활동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은 크게 세 부류가 있다. 첫째, 문헌정보학과 교수, 둘째, 각 종 도서관의 최고 및 중간 경영자, 셋째, 중앙부처 도서관의 사서직 공무원 및 도서관 관련 전문 단체 간부들이 있다. 이들의 수는 총 2,200명<sup>35)</sup>에 이른다. 이것은 전국적으로 2,200여 곳의 도서관 및 학교에서 도서관전문가들이 활동하는 것을 의미한다.

도서관 발전을 위한 도서관전문가의 효과적인 운영위원회 활동 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학교운영위원회 활동의 경우 도서관전문가는 가급적 위원장으로 진출하도록 하고, 객관적인 정책안을 제시하기 위해 학교경영 및 행정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하고, 교장을 비롯한 다른 위원들과 잘 소통한다. 그리고 학교도서관의 중요성과 사서의 필요성을 다른 위원들에게 지속적으로 이해 및 설득시킨다.

둘째, 효과적인 공공도서관 운영위원회 활동 방안은 먼저 국내외의 우수한 공공도서관에 대한 많은 정보를 준비하고, 공공도서관의 예산업무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하고, 도서관 운영에 대한 비판과 함께 대안을 제시하고, 사명감을 갖고 위원회 활동에 임한다. 그리고 공공도서관의 중요성 및 사서의 필요성에 대해서 다른 위원들에게 잘 설명하도록 한다.

셋째, 대학도서관의 경우 아직까지 학교 밖 외부 인사가 도서관운영위원회에 참여 할 수 없다. 따라서 외부 인사를 초빙하여 도서관운영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대학과 도서관 규정이 바뀌어야 한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대학도서관 사서들의 인식변화가 선행되어야 하겠다.

끝으로 도서관전문가의 도서관 관련 각종 위원회 참여를 통한 도서관 발전을 가져오기 위해서는 도서관계의 다음과 같은 노력이 필요하겠다.

첫째, 무엇보다도 도서관계 인사들의 외부 활동에 대한 적극성이 요구된다.

둘째, 현장 사서들의 외부 도서관전문가를 도서관 운영위원회에 초빙하는 것에 대한 적극성이 필요하다. 특히, 행정직 관장이 경영하고 있는 공공도서관의 경우 사서직 중간경영자가 적극적으로 도서관전문가의 운영위원회 참여를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겠다.

셋째, 외부 인사를 대학도서관 운영위원회에 초빙하기 위해서는 대학 및 대학도서관의 관련 규정이 바뀌어야 한다.

넷째, 장기적으로 학계에서의 도서관전문가의 도서관 관련 위원회 참여를 통한 도서관 발전에 관한 연구가 필요하겠다. 그리고 이러한 연구를 통해 구체적이고 효과적인 활동 방안에 대한 노하우(know-how)가 수집·활용되어야 하겠다.

35) 문헌정보학 교수 170여명, 공공도서관 중간경영자 1,180여명, 대학도서관 중간경영자 880여명 등.

## 참 고 문 헌

- 국립국어원 편. 표준국어대사전. 서울 : 두산동아, 1999.
- 김석준 등. 거버넌스의 이해. 서울 : 대영문화사, 2002.
- 김성열. “학교교육의 제도적 조건으로서의 학교운영위원회 : 제도의 도입과 정착, 활성화.” 교육인류학연구, 제4권, 제2호(2001), pp.71-129.
- 김용원. 도서관정보정책. 황면 역. 서울 : 한국도서관협회, 2004.
- 사공철 등. 문헌정보학의 이해. 서울 : 한국도서관협회, 1996.
- 서울특별시 마포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조례(조례 제670호 제정 2007.7.26).
- 송기호. 학교도서관 운영의 실제. 서울 : 한국도서관협회, 2009.
- 윤희운. 대학도서관경영론. 대구 : 태일사, 2002.
- 이만수. “정보사회에서의 국가 도서관 정책에 관한 연구.”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제32권, 제1호 (2001. 3), pp.201-221.
- 이연옥. 한국 공공도서관 운동사. 서울 : 한국도서관협회, 2002.
- 정동열. 도서관경영론. 서울 : 한국도서관협회, 2007.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 1995.7.26] [법률 제4951호, 1995.7.26, 일부개정].
- 초·중등교육법 [시행 2008.6.22] [법률 제8917호 시행, 2008.3.21, 일부개정].
- 한국도서관협회. 2008 한국도서관연감. 서울 : 한국도서관협회, 2008.
- 한국도서관협회 도서관기준작성특별위원회. 한국도서관기준. 2003년판. 서울 : 한국도서관협회, 2003.
- Hage, C. L. *The Public Library Start-Up Guide*. Chicago : American Library Association, 2004.
- Usherwood, B. *Rediscovering Public Library Management*. London : Library Association Publishing, 1996.

